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법인·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	유선	
				무선	
	직위	전자우편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1부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공고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